

『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』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5년 10월 6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교내 체육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, 경제적 문제, 사회의 관심부족 등으로 공동체 내 생활체육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학생, 여학생, 유아 및 장애학생 등에게 학교 교육 내에서 체계적인 스포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복지 지원을 하여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“학교”, “스포츠복지” 및 “학교스포츠클럽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

규정함(안 제2조)

-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한 스포츠복지 활동이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스포츠복지 활동을 위한 사업대상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6일(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(참조 :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63, 팩스 032-440-878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출자	해당 조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고
○주 소 : ○성 명 : ○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 의 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

(박종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10. 5.

발 의 자 : 박종우·김금용·김진규 의원
(찬성자 8명)

1. 제안이유

-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교내 체육활동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, 경제적 문제, 사회의 관심부족 등으로 공동체 내 생활체육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학생, 여학생, 유아 및 장애학생 등에게 학교 교육 내에서 체계적인 스포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복지 지원을 하여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“학교”, “스포츠복지” 및 “학교스포츠클럽”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한 스포츠복지 활동이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스포츠복지 활동을 위한 사업대상을 규정하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,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.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육기본법」 제22조의2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스포츠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2. “스포츠복지”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학생, 여학생, 유아 및 장애학생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.
3. “학교스포츠클럽”이란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한 스포츠복지 활동이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수행 및 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심리운동, 맞춤운동 프로그램 운영

2. 스포츠복지교육사업

3. 비만관리 및 기초체력증진사업

4. 스포츠복지캠프 및 대회·행사의 개최

5. 그 밖에 교육감이 스포츠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교육기본법 ○ 제22조의2(학교체육) ○ 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☐ 학교체육 진흥법 ○ 제3조(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【교육기본법】

제22조2(학교체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【학교체육 진흥법】

제3조(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교육감을 포함한다)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조례안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학생, 여학생, 유아 및 장애학생 등에게 학교 교육 내에서 체계적인 스포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복지 지원을 하여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, 사업의 추진 및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이 수반될 수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사업의 추진 및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지원이 달라져 비용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교육위원회 박 종 우 의원